

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

개정('26.3.10.)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('26.10.15. 등기송달)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대한민국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)과 교섭하려는 해당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우정사업본부 노사협력담당관실(044-200-8192, purity11248@korea.kr)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: 전국민주우체국본부(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지부)

○ 그 대표자: 고광완

※ 노동조합 명칭 및 대표자는 노조가 교섭요구 시 제출한 내용을 기입함

○ 최초 교섭요구 일자: 2026. 5. 29.

○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: 2026. 10. 16. ~ 10. 23.

○ 교섭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

-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
-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

※ 대한민국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)은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 의제를 판단받은 사항에 한하여 교섭을 진행할 예정임

2026. 10. 16.

우정사업본부장

